

청렴 청신호, 부패 적신호
www.i-sh.co.kr

※ 주택관리번호: 2023-000286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023. 6. 28. 공고



SH 서울주택도시공사

CONTENTS

1. 공급일정	7
2. 신청관련 문의	7
3. 공급현황	8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15
5. 신청접수 안내	27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29
7. 심사서류 제출안내	30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34
9. 동호추첨 및 당첨자·예비(입주)자발표	35
10.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36
11. 신청 시 유의사항	37
12. 단지 유의사항	39
13. 단지별 주소	42
[별표1] 임대금액 상세 안내	44
[별표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48
[별표3]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49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023. 6. 28. 공고)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2023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각 공급 구분 별 세부 자격 요건은 **15페이지(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으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청약 접수를 시행합니다.
-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후에는 가점 산정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낮게 기입한 경우를 포함, 모든 수정이 불가합니다.
- 과거 입주사실이 있거나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분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각 단지의 계약 및 입주 일정은 준공일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4-6 공통 신청자격-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2023-000286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 금회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8페이지(3. 공급현황)**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단지 및 평형에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해당 단지에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주거 이동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에 따라 동일 임대주택 유형에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당첨자 발표일) 2년이 경과할 때마다(첫 입주자격 재심사 시기: 2025.11.21.) 예비입주자 대상 입주자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시 입주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후 예비 공급 시에는 **재심사 시기 임대시세 및 상호 전환율을 새로 반영하여 주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35페이지(9. 동호추첨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이 빠른 순으로 먼저 공급합니다.
- 해당 공고문 내 '우선 공급', '일반 공급'에는 예비입주자 모집의 의미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서 공급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금회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 및 순번은 자동 삭제처리** 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은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타 사업주체(LH, GH 등)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청약기간: 2023. 7. 10.(월) 10:00 ~ 7. 12.(수) 17:00
방문 청약기간: 2023. 7. 11.(화) ~ 7. 12.(수) 10:00 ~ 17:00
- ※ 방문 청약 기간에는 인터넷 청약계층의 접수만 받습니다.
- ※ 방문 청약은 단지별, 공급구분 별로 신청 가능 일정이 상이하오니 **공고문 28페이지**의 「방문 인터넷 신청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여건상 단지별로 계약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 2024년 1월~

- 신규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단지별 준공일정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2024년 1월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 공급 보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관련 문의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진행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신청자 스스로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현황 : 총 1,248호

● 임대 대상 및 금액 [신규 공급] 548호

자치구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계	우선	일반	계	계약금 (20%)	잔금 (80%)		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기타공용 면적	계약 면적	
				548	279	269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수색13)	39	신혼부부	20	10	10	89,600	17,920	71,680	373,000	39.97	18.67	40.01	98.65	
			고령자	10	5	5	85,120	17,024	68,096	354,000	39.97	18.67	40.01	98.65	
		49	신혼부부	15	8	7	112,000	22,400	89,600	466,000	49.92	24.00	49.96	123.88	
			고령자	6	3	3	106,400	21,280	85,120	442,000	49.92	24.00	49.96	123.88	
		53	신혼부부	19	10	9	119,200	23,840	95,360	498,000	53.95	24.09	54.00	132.04	
고령자	4		2	2	113,240	22,648	90,592	473,000	53.95	24.09	54.00	132.04			
금천구	더 더블유 서울 (가산동 143-7)	20	청년	11	6	5	소득있는	43,200	8,640	34,560	186,000	20.38	9.87	4.02	34.27
			소득없는				40,800	8,160	32,640	176,000	20.38	9.87	4.02	34.27	
			주거급여수급자	2	1	1	36,000	7,200	28,800	155,000	20.38	9.87	4.02	34.27	
		22	청년	2	1	1	소득있는	47,520	9,504	38,016	207,000	22.87	11.09	4.51	38.47
소득없는	44,880		8,976				35,904	196,000	22.87	11.09	4.51	38.47			
성북구	더푸름 (석관동 178-11, 179-20외1)	28	청년	2	1	1	소득있는	57,600	11,520	46,080	231,000	28.66	8.52	1.17	38.35
			소득없는				54,400	10,880	43,520	218,000	28.66	8.52	1.17	38.35	
		주거급여수급자	1	1	0	48,000	9,600	38,400	193,000	28.66	8.52	1.17	38.35		
49	신혼부부	1	1	0	109,600	21,920	87,680	438,000	49.53	9.71	7.05	66.29			
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 (대치동제1지구)	51	신혼부부	6	3	3	196,800	39,360	157,440	771,000	51.74	18.50	49.82	120.06	
			고령자	2	1	1	186,960	37,392	149,568	733,000	51.74	18.50	49.82	120.06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주공1)	49	신혼부부	159	80	79	187,200	37,440	149,760	732,000	49.69	21.22	47.53	118.44	
			고령자	32	16	16	177,840	35,568	142,272	695,000	49.69	21.22	47.53	118.44	
		59	신혼부부	160	80	80	225,600	45,120	180,480	883,000	59.97	25.62	57.37	142.96	
			고령자	42	21	21	214,320	42,864	171,456	839,000	59.97	25.62	57.37	142.96	
서초구	반포르엘2차 (신반포14차)	54	신혼부부	16	8	8	224,800	44,960	179,840	805,000	54.99	18.53	55.68	129.20	
			고령자	4	2	2	213,560	42,712	170,848	765,000	54.99	18.53	55.68	129.20	
		59	신혼부부	12	6	6	244,800	48,960	195,840	876,000	59.89	20.00	60.64	140.53	
			고령자	3	2	1	232,560	46,512	186,048	832,000	59.89	20.00	60.64	140.53	
양천구	신목동비바힐스 (신월동981-2)	58	신혼부부	4	2	2	147,200	29,440	117,760	566,000	58.90	14.09	24.56	97.55	
			고령자	2	1	1	139,840	27,968	111,872	537,000	58.90	14.09	24.56	97.55	
마포구	아현푸르지오올라시티 (아현동275-2)	31	청년	1	1	0	소득있는	84,240	16,848	67,392	336,000	31.59	13.15	29.41	74.15
			소득없는				79,560	15,912	63,648	318,000	31.59	13.15	29.41	74.15	
		33	청년	1	1	0	소득있는	89,280	17,856	71,424	358,000	33.58	13.36	31.28	78.22
			소득없는				84,320	16,864	67,456	338,000	33.58	13.36	31.28	78.22	
		38	청년	1	1	0	소득있는	102,240	20,448	81,792	410,000	38.79	15.03	36.13	89.95
			소득없는				96,560	19,312	77,248	387,000	38.79	15.03	36.13	89.95	
신혼부부	2	1	1	113,600	22,720	90,880	455,000	38.79	15.03	36.13	89.95				
성북구	초행지붕-정릉	20	대학생	8	4	4	41,480	8,296	33,184	166,000	20.34	13.85	-	34.19	

- 신규 단지의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초행지붕-정릉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형 단지입니다.
- DMC SK뷰 아이파크포레(수색13), 더 더블유 서울(가산동 143-7), 더푸름(석관동 178-11, 179-20외1), 대치푸르지오써밋(대치동제1지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 반포르엘2차(신반포14차), 신목동비바힐스(신월동981-2),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아현동275-2)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입니다.
-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소유권 보존 및 이전)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대 대상 및 금액 [재공급] : 700호

자치구	단지명	공급 유형(㎡)	공급구분	합계(A+B)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B)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세대별 계약면적(㎡)				
					우선	일반		계	계약금(20%)	잔금(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계				700	240		460									
					136	104										
강동구	강동 리엔파크 11단지	17	대학생	78	14	14	50	58,480	11,696	46,784	205,000	17.97	13.65	19.13	50.75	
		29S	고령자	55	12	11	32	109,440	21,888	87,552	383,000	29.98	21.85	31.92	83.75	
강동구	강동 리엔파크 14단지	17	청년	85	소득있는	21	20	44	61,200	12,240	48,960	215,000	17.81	8.82	15.34	41.97
			소득없는		57,800				11,560	46,240	203,000	17.81	8.82	15.34	41.97	
강남구	개포래미안 포레스트	49	신혼부부	4	1	0	3	187,200	37,440	149,760	656,000	49.92	24.39	48.85	123.16	
강동구	고덕자이	59	신혼부부	4	1	0	3	173,600	34,720	138,880	606,000	59.71	24.58	45.50	129.79	
강북구	꿈의숲 효성해링턴플레이스	49	신혼부부	12	2	1	9	96,800	19,360	77,440	405,000	49.48	16.16	38.11	103.75	
강남구	디에이치 포레스트	59	고령자	4	1	0	3	218,880	43,776	175,104	766,000	59.92	20.70	56.99	137.61	
동작구	래미안 로이파크	59	신혼부부	4	1	0	3	192,000	38,400	153,600	641,000	59.98	20.39	52.75	133.12	
강동구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59	신혼부부	8	1	1	6	171,200	34,240	136,960	599,000	59.11	24.59	43.90	127.60	
서초구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48	신혼부부	12	2	1	9	194,400	38,880	155,520	648,000	48.48	22.83	41.68	112.99	
강남구	래미안 개포루체하임	49	신혼부부	18	3	3	12	196,800	39,360	157,440	689,000	49.99	25.37	40.40	115.76	
강남구	래미안라클래시	59	신혼부부	12	2	1	9	244,800	48,960	195,840	858,000	59.99	24.47	54.12	138.58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	49	신혼부부	8	1	1	6	195,200	39,040	156,160	683,000	49.91	17.86	44.43	112.20	
서초구	반포래미안 아이파크	59	신혼부부	12	2	1	9	238,400	47,680	190,720	794,000	59.95	33.12	38.43	131.50	
서초구	반포센트럴자이	59	신혼부부	4	1	0	3	237,600	47,520	190,080	792,000	59.98	22.19	45.50	127.67	
서초구	반포써밋	49	신혼부부	12	2	1	9	203,200	40,640	162,560	678,000	49.80	15.91	42.19	107.90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54	신혼부부	8	1	1	6	222,400	44,480	177,920	742,000	54.99	17.92	58.41	131.32	
동작구	보라매자이	36	신혼부부	4	1	0	3	112,000	22,400	89,600	372,000	36.60	10.32	20.70	67.62	

자치구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합계 (A+B)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B)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우선	일반		계	계약금 (20%)	잔금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송파구	송파파크데일 3	21	청년	소득있는	64	15	15	34	56,880	11,376	45,504	180,000	21.92	12.07	14.55	48.54
				소득없는					53,720	10,744	42,976					
노원구	수락리버타운	21S		고령자	4	1	0	3	39,520	7,904	31,616	148,000	21.92	13.35	3.02	38.29
구로구	숲에리움 (오류1동 청신호)	21	청년	소득있는	21	4	3	14	69,840	13,968	55,872	251,000	21.04	13.18	12.11	46.33
				소득없는					65,960	13,192	52,768					
중랑구	신내 글로리움	44		신혼부부	16	2	2	12	94,400	18,880	75,520	354,000	44.68	27.07	30.42	102.17
중랑구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29	청년	소득있는	12	2	1	9	58,320	11,664	46,656	219,000	29.84	25.27	6.55	61.66
				소득없는					55,080	11,016	44,064					
중랑구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21	청년	소득있는	4	1	0	3	38,880	7,776	31,104	146,000	21.96	11.82	13.85	47.63
				소득없는					36,720	7,344	29,376					
양천구	신정 파크샤인	36	청년	소득있는	4	1	0	3	111,600	22,320	89,280	400,000	36.09	16.52	28.18	80.79
				소득없는					105,400	21,080	84,320					
		41		신혼부부	8	1	1	6	143,200	28,640	114,560	513,000	41.81	18.84	32.65	93.30
성북구	정릉 하늘마루	26S	청년	고령자	12	2	1	9	86,640	17,328	69,312	303,000	26.15	14.83	19.49	60.47
				소득있는	20	3	2	15	82,080	16,416	65,664	287,000	26.39	14.82	19.68	60.89
				소득없는					77,520	15,504	62,016					
		36		신혼부부	4	1	0	3	125,600	25,120	100,480	440,000	36.33	19.95	27.06	83.34
구로구	천왕연지마을 2	31	청년	소득있는	12	2	1	9	54,000	10,800	43,200	194,000	31.06	15.85	30.11	77.02
				소득없는					51,000	10,200	40,800					
				21		고령자	4	1	0	3	41,040	8,208	32,832	147,000	22.23	12.42
구로구	천왕이펜하우스 8단지 (천왕지구 8단지)	29S		주거급여수급자	16	2	2	12	43,800	8,760	35,040	157,000	29.38	18.51	15.36	63.25
		36S		고령자	4	1	0	3	69,920	13,984	55,936	251,000	36.87	23.23	19.28	79.38
		45		신혼부부	18	3	3	12	91,200	18,240	72,960	327,000	45.77	28.84	23.93	98.54
성북구	초행지봉-동소문	15		대학생	4	1	0	3	29,240	5,848	23,392	103,000	15.55	7.15	9.45	32.15
강북구	초행지봉-미아3	53		신혼부부	8	1	1	6	123,200	24,640	98,560	514,000	54.90	54.70	-	109.60
은평구	초행지봉-신사	26	청년	소득있는	4	1	0	3	74,160	14,832	59,328	290,000	26.50	8.70	-	35.20
				소득없는					70,040	14,008	56,032					
		29 (복층)	청년	소득있는	4	1	0	3	81,360	16,272	65,088	319,000	29.50	9.68	-	39.18
				소득없는					76,840	15,368	61,472					
		23		대학생	4	1	0	3	63,920	12,784	51,136	250,000	23.95	7.86	-	31.81
구로구	향동 하버라인지구 (9·10·11단지)	29S		주거급여수급자	16	2	2	12	42,600	8,520	34,080	152,000	29.69	17.35	27.23	74.27
		39S		고령자	4	1	0	3	72,200	14,440	57,760	258,000	39.69	22.59	36.38	98.66
		29	청년	소득있는	16	2	2	12	51,120	10,224	40,896	183,000	29.69	17.35	27.23	74.27
				소득없는					48,280	9,656	38,624					
		39	청년	소득있는	38	8	8	22	68,400	13,680	54,720	245,000	39.69	22.59	36.38	98.66
				소득없는					64,600	12,920	51,680					
				고령자	27	5	4	18	72,200	14,440	57,760	258,000	39.69	22.59	36.38	98.66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계	48		신혼부부	4	1	0	3	121,600	24,320	97,280	456,000	48.98	25.00	42.38	116.36
송파구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_재건축	59		신혼부부	4	1	0	3	192,000	38,400	153,600	607,000	59.69	32.03	39.23	130.95

- 재공급 단지는 '금회 공급할 예비입주자'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강동 리엔파크 11단지, 강동 리엔파크 14단지, 송파파크데일3, 수락 리버타운, 숲에리움(오류1동 청신호), 신내 글로리움,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신정 파크샤인, 정릉 하늘마루, 천왕 연지마을2, 천왕 이펜하우스 8단지(천왕지구 8단지), 초행지봉-동소문, 초행지봉-미야3, 초행지봉-신사, 향동 하버라인 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이며, 그 외 단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입니다.
- 공급유형 중 주거약자용 주택(S형)의 경우 잔여 세대가 발생할 시 동일단지, 동일면적간에는 S형 구분없이 공급대상을 바꾸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재공급단지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누수, 결로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당첨 대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 금액 전환 안내

○ 상호전환의 종류

상호전환 종류	효과	전환금액 제한	전환이율 ※변동 가능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기준임대료의 50%까지 전환가능	6.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 임대료 ↑	기준보증금의 50%까지 전환가능	2.5%

○ 상호전환 적용 금액: p44. [별표1] 임대금액 상세 안내 참고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단,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 시 전환 임대금액은 공고문 p44. [별표1]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모든 공급 주택은 공급유형 별로 여러 평면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유사 평형이 하나의 공급 유형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단지 동일 공급 유형에 신청했다라도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서로 다른 평면 유형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합니다.(단, 공급대상 별로는 상이합니다.)
- 공고문의 세대 당 계약 면적은 단지별 1개만 표기된 것으로 동일 공급유형이라도 평면유형 별로 계약면적 및 구조(복층 유 무 등)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평면도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의 세대 당 계약 면적은 서울특별시 소유 매입형 단지의 경우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면적으로 표기, 건설형 단지의 경우 공고 시점 설계된 면적으로 표기하여 준공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팸플릿 혹은 추후 사전 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단, 서류심사 결과 허위기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격처리 되어 해당 공고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 유형 내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공사 방침에 따라 미달된 계층의 모집호수를 초과된 계층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공급 단지 별 · 해당 동호 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단지별 주소] 참조)
-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 세대 수, 공급 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주차장, 대피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난방방식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수색13)	서울특별시	에스케이 에코플랜트(주),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 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더 더블유 서울 (가산동 143-7)	서울특별시	송림와이에스 종합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	예향도인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더푸름 (석관동 178-11, 179-20외1)	서울특별시	(주)케이에이치종합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원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대치푸르지오써밋 (대치동제1지구)	서울특별시	(주)대우건설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개포주공1)	서울특별시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열병합
반포르엘2차 (신반포14차)	서울특별시	롯데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서울보증보험(주)	(주)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주)아이비엔지니어링	지역난방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난방방식
신목동비바힐스 (신월동981-2)	서울특별시	우암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대한건축 (주)씨엠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아현동275-2)	서울특별시	(주)대우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시몽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초행지봉-정릉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현창산업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사사무소제이더블유(주)	개별난방
강동리엔파크 11단지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신동아건설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및 철 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강동리엔파크 14단지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대우조선, 해양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건원엔지니어링	지역난방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서울특별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정림건축사사무소,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고덕자이	서울특별시	GS건설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	태백	지역난방
꿈의숲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주)효성중공업, (주)진흥기업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우정유빅스엔지니어링	개별난방
디에이치포레스트	서울특별시	현대건설	철근콘크리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당지이앤씨(주)	지역난방
래미안 로이파크	서울특별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서울특별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PC복합구조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가람건축, (주)경민엔지니어링, (주)건창기술단	개별난방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서울특별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 및 PC복합구조	-	(주)성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서울특별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지하 RC+PC 복합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래미안라클래시	서울특별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래미안블레스티지	서울특별시	삼성물산(주)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지하 RC+PC 복합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서울특별시	현대사업개발(주), 삼성물산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동우이엔씨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반포센트럴자이	서울특별시	지에스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역난방
반포써밋	서울특별시	(주)대우건설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축사사무소 태백	지역난방
방배그랑자이	서울특별시	GS건설	철근콘크리트무량판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해밀씨엠	지역난방
보라매자이	서울특별시	GS건설	철근콘크리트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우엔지니어링, 태양이앤씨, 세정이에프씨	개별난방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난방방식
송파파크데일 3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원건설 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유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수락리버타운	서울주택 도시공사	한일건설(주), 보령종합건설(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서울주택도시공사(자체감리)	개별난방
숲에리움 (오류1동 청신호)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보미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목양건축사사무소, (주)동해종합기술공사	개별난방
신내 글로리움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옥토 외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유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지역난방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주택 도시공사	한일건설 외	철근콘크리트구조	-	서울주택도시공사(자체감리)	개별난방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주택 도시공사	한일건설(주), 보령종합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	서울주택도시공사(자체감리)	개별난방
신정 파크샤인	서울주택 도시공사	샘코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정릉 하늘마루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대흥토건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천왕연지마을 2	서울주택 도시공사	대들보건설 외 1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천왕이편하우스8단지 (천왕지구 8단지)	서울주택 도시공사	동우건설산업(주) 외 2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건원엔지니어링	개별난방
초행지봉-동소문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광백개발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목금토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초행지봉-미아-3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백림종합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	도원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초행지봉-신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계산엔지니어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벽식구조	-	건축사사무소제이더블유(주)	개별난방
향동 하버라인 지구 (9·10·11단지)	서울주택 도시공사	동부건설(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11단지 공사 자체감리)	지역난방
힐스테이트 청계	서울특별시	현대건설(주)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개별난방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재건축	서울특별시	대림산업(주)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지역난방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 자격

4-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⑦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④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⑦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u> 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u>서울특별시 외 지역</u> 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u>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u>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 모두 해당자치구 외에 거주해야함)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20. 6. 28.(당일포함) 이전인 자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20. 6. 29.(당일포함) 이후인 자

-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 항목은 우선공급 1순위로 신청한 분에게만 적용합니다.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추천
	2순위	순위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을, 취업준비생은 거주지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점을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수**는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하며,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 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대학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 내 조회를 통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2023. 6. 28.)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계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하며, 졸업유예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시 일반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2 청년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㉓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④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3. 6. 29. ~ 2004. 6. 28.)
 - ①-④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u> (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20. 6. 28.(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20. 6. 29.(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금회 공급할 공가가 없는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결정됩니다.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대학 및 고등학교**의 범위는 대학생 계층과 동일)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이내이지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종사중인 업무에 종사한 기간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그 전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2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단지의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기준)이 적용됩니다.
- ※ ①-④ 2)의 ‘**퇴직**’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 ①-④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이므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를 ‘거주지’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신청 시 ‘**소득없음**’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 ※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 관련 자치구를 입력하는 경우,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인해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신청 시 **해당 자치구 입력과 관련,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인해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3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㉕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㉓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①-㉕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6. 6. 29. 이후 출생)
-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활동소재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내 3년 이상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20. 6. 28.(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내 3년 미만 거주 ※ 서울시 최종전입일이 2020. 6. 29.(당일포함) 이후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배점은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및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배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재혼을 하였을 경우 재혼 전의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발급 가능한 한 가지를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 시 수정은 불가능하며 결격 처리됩니다.
- ※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 관련 자치구를 입력하는 경우, 본인/(예비)배우자,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됩니다

4-4 고령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8. 6. 28.(당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8. 6. 28. (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8. 6. 29. (당일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호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4-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5년 이상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8. 6. 28. (당일포함) 이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u> 에 5년 미만 거주 ※ 자치구 최종전입일이 2018. 6. 29. (당일포함) 이후인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u>해당자치구 외</u> <u>서울특별시</u> 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4-6 공통 신청자격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48페이지** [별표2], [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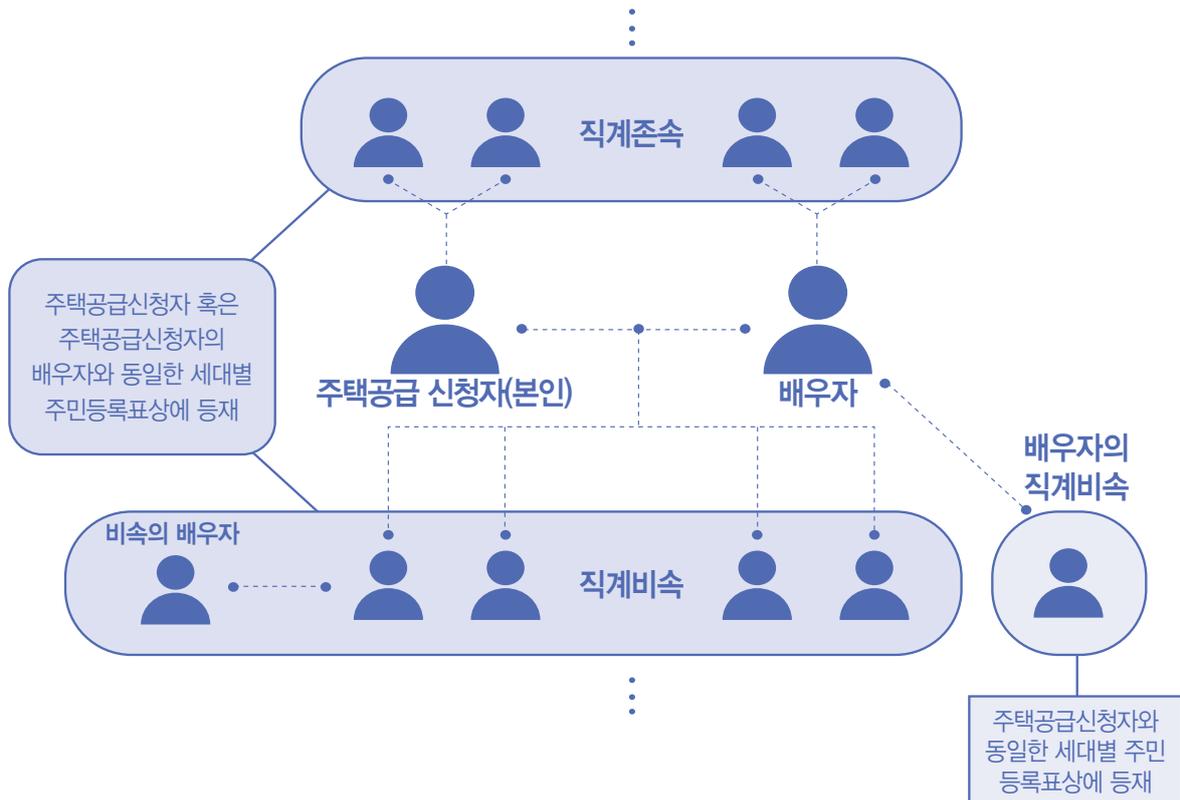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소득유무 및 신혼부부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말하는 소득'의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구분	소득기준					
	구분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청년 계층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					
	고령자 계층					
	신혼부부 계층 (예비, 한부모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신혼부부 계층 (예비 포함, 맞벌이인 경우)	-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소득	<p>*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 가구 기준소득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661,147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793,377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p> <p>*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1인가구는 기준금액에 20%p 가산, 2인은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p> <p>*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p> <p>*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만 해당됩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p> <p>* 청년 계층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만 산정)</p> <p>*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p> <p>※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인정</p> <p>★ 소득기준 금액 산출 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를 회신받아 판단합니다. 공고문 <소득·자산 산정방법>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주택청약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로,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8,5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36,100만원 이하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자동차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신혼부부 계층·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공급 순위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사회초년생 일반자격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와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산정시점은 공고일 기준)
- 이번 공고의 예비자가 되실 경우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예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며 예비자 공급 시 제외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신청접수 안내

5-1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신청가능(마감시간 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자격요건(해당신청자격, 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우선공급순위, 가점사항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서울시(자치구) 최종전입일, 가점사항 등) 서류심사 시 해당가점이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해당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요망)

⇒ 청약 시 본인착오 또는 상담 시 착오안내 등으로 인해 본인의 기입한 내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가지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드로이드 OS 정책 변경에 따라 모바일 청약 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다운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시 해당 내용 팝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청약 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공동인증서 본인확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 3단계(신청자격 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인증서 인증확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3. 7. 10.(월) 10:00 ~ 7. 12.(수) 17:00**이며 신청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개인용)공동인증서 발급 및 소지**
-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본인이 해당하는 우선·일반공급에 제대로 신청하셨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해당자가 착오로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시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제대로 선택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며,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결격됨을 알려드립니다.
- ※ 허위 기재로 신청한 경우 결격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2 방문 청약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가 장시간(3~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방문청약 신청 대상자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 방문청약 신청기간 : 2023. 7. 11.(화) ~ 2023. 7. 12.(수) 10:00 ~ 17:00
- 방문청약 신청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단지 및 계층별 신청 일정

방문신청일	신청가능 계층	신청 가능 단지	
7. 11.(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신규 단지	DMC SK뷰 아이파크포레(수색13), 더 더블유 서울(가산동143-7), 더푸름(석관동), 대치푸르지오써밋(대치동제1지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 반포르엘2차(신반포14차), 신목동비바힐스(신월동981-2)
7. 12.(수)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재공급 단지	강동 리엔파크 11단지, 디에이치 포레센트, 수락리버타운, 정릉 하늘마루, 천왕연지마을 2, 천왕이편하우스8단지(천왕지구 8단지), 향동 하버라인 지구(9·10·11단지)

- 방문 청약 방법: 공사 직원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청약을 위임한 방문자의 신청을 대행
- 청약 위임 시 필요 서류

본인 직접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청 시 (직계 존비속, 배우자 포함)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여권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 운전면허증 :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운전면허증에 한함 - 신청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 공고일(2023. 6. 28) 이후 본인발급분만 인정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1통 * 위임장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방문접수 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우선공급 신청 시 해당 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자치구최종전입일 및 서울시최종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 등을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및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 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전체이력 발급)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차: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 가능
- ※ 허위 기재로 신청한 경우 결격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 및 모집세대수의 상위 200%~400%내외(세부비율 하단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6. 28.)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3. 7. 28.(금) 14: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서류심사대상자”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서류심사대상자”조회
 - ※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발표 일시 이전에 조회하시는 경우 서류심사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3. 8. 2.(수) ~ 2023. 8. 4.(금)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3. 8. 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행복주택 담당자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6. 28.)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신규공급
 - 기본기준: 공급세대수의 200% 내외
- 재공급
 - 기본기준: 모집세대수의 200% 내외
 -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
 - 모집세대수가 5호 이하인 경우: 모집세대수의 400% 내외

7 심사서류 제출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6. 28.)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 예시 : 123456-1234567(O), 123456-1*****(X)
- ※ 서류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정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이용 제3자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정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개인 싸인 불가)
- ※ 제출서류의 미비,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해당 가점이 차감되며 제출한 서류 및 조회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국토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서류심사 결과 순위 및 가점 사항 변경으로 서류심사대상 커트라인 미만이 되는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 결격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 ※ 입주자격 조사 결과 확정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통 제출

	구비서류	비고	발급처
전원 제출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 심사서류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SH 공사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계층 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참고 • 제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전원 한글 정자 서명,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동인증서로 동의 시 원본미제출 가능하나 스캔으로 올릴 시 반드시 원본제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 단,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주민센터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해당자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계층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분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대학생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청자 부모	신청자 본인, 부모
청년 -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청년 -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X

● 계층별 제출 서류

● 대학생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자격 확인	가. 대학생	재학생	재학증명서	해당 학교 SH공사 양식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 양식) * 단,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졸업유예자	졸업유예증명서	
		나.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자	우선 1순위 신청자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 주민등록등초본		주민센터	
	가족관계 단절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실질적 부양자 확인용 각서		SH공사 양식	

● 청년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소득 유무 확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자격 확인	나.사회 초년생	최종 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	해당 학교		
			재취업준비생	퇴직증명서	해당 직장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일 기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센터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 신청한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해당 직장	
			그 외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해당 직장
					병역 의무 이행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 **신혼부부**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자격 확인	가.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나.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본인	
				세대구성확인서	공사 양식	
				공동신청확인서	공사 양식	
				위임장	공사 양식	
다. 한부모가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해당자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 신청한 경우	전원 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서류 제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직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그 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해당 직장
			병역 의무 이행 중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해당 직장 또는 해당 세무서
			병무청			

● **고령자**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해당자	가점 확인	장애인	본인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주민센터
			배우자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한정)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1~7급자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이전 등록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국가보훈처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보훈처

● **주거급여수급자**

대상	용도	제출 서류		발급처	
전원 제출	자격 확인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해당자	가점 확인	장애인	본인	장애인등록증(등록일 기재)	주민센터
			배우자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한정)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이전 등록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국가보훈처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서류심사 작성 양식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심사 제출 서류 중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예시) 3곳(1),(2),(3) 모두 신청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해당(성명 정자 작성 또는 인감증명서 도장날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2)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3)	작성예시
신청자 본인	홍길동	1234567890-1	홍길동	홍길동	○
	홍길동	1234567890-1	인감도장 찍기	인감도장 찍기	○
	홍길동	1234567890-1	HONG	HONG	×
	홍길동	1234567890-1	홍	홍	×
배우자	김가나	1234567890-1	김가나	김가나	○
자녀	홍다라	1234567890-1	홍다라	홍다라	○
· · ·					

- 우편 제출 시 오류 제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오류 제출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초과는 미제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층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계약 시 계층변경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단,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변경 대상 계층의 신청자격 및 소득·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는 동일한 공급대상(공급구분) 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단,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항 없이 확인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중 청년계층의 소득 활동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추후 갱신계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단, 갱신 계약 시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동호추첨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단, 주거약자용 주택(S형) 신청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배정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1층~3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

● 예비입주자

- 신규 단지의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재공급 단지는 3. 공급현황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이 빠른 순으로 먼저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부여된 순번의 유효기간은 영구입니다. 다만,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당첨자 발표일) 2년이 경과할 때마다(첫 입주자격 재심사 시기: 2025.11.21.) 예비입주자 대상 입주자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시 입주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후 예비 공급 시에는 **재심사 시기 임대시세 및 상호 전환율을 새로 반영하여 주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공급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3. 11. 22.(수) 14시 이후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공사게시판, ARS 조회(1600-3456)
- 당첨자의 인적사항(개명) 및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11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만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근거하여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할지역 센터에서 신청가능) ※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입주시정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가 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며 예비자 공급 시 제외처리 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우리 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동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제49조의8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청약 시 기재하지 못한 태아, 자녀 수는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제외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입주 및 입주 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재개발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단지의 준공 이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소유권 보존 및 이전)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 임차료 분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수급자도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납부해야하는 임차료에서 본인의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납부 금액이 없을 수 있음)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주거급여는 보장기관에서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2

단지 유의사항

■ 공통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현장확인 불가능하므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공간)을 설치하여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호수에 따라 전자팸플릿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시 발생하는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야외 운동공간,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해당 단지만),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과 비교하여 일부 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세대 매입형 단지(공통) ■

- 단지별로 세대 내 옵션 설치 여부가 상이하며,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단지는 계약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폭, 높이, 용량,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단지는 계약자가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며, 희망하는 에어컨의 종류, 용량(규격) 등에 따라 별도의 배관 공사가 필요할 수 있고,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을 복구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단지는 기계식 주차타워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항 ■

[초행지붕-정릉]

- 본 건물은 지상 1층~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으로 총 8세대입니다.
- 1층 공용부는 공용주방, 공용식당, 라운지, 세탁실, 공용화장실,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 옥탑층에는 옥상정원 및 옥상마당이 위치합니다.

〈 단지별 세대 내 옵션 설치 여부 〉

단지명	빌트인 가전 항목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초행지붕-정릉	0	0	0

[더 더블유 서울]

- 기계식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차종은 주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치푸르지오써밋]

- 101동, 104동, 109동 하부 주차 출입구가 있어 이에 따라 눈부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4동에 위치한 근린생활 시설 출입을 위한 차량이 주거 차량 동선과 겹칠 수 있습니다.
- 109동, 106동 지하층 기계실, 빗물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로 인하여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냄새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 가동 및 주기적 시험 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목동비바힐스]

- 본 사업부지는 항공기 소음 대책 지역 제3종 구역 “다” 지구로서 항공기 이륙 및 착륙 시 소음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본 건축물에는 주차타워가 설치되어 있어 진동이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단지별 주소 ※ 신규 단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구분	단지명	주소(지번)
신규	DMC SK뷰 아이파크포레(수색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
	더 더블유 서울(가산동 143-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3-7
	더푸름(석관동 178-11, 179-20외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78-11, 179-20외1
	대치푸르지오써밋(대치동제1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4 일대
	반포르엘2차(신반포1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 외 1필지
	신목동비바힐스(신월동98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1-2외 2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아현동27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275-2번지 외
	초행지붕-정릉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7-39
재공급	강동리엔파크 11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6-3 강동리엔파크11단지
	강동리엔파크 14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28 강동리엔파크14단지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82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고덕자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521 고덕자이
	꿈의숲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69 꿈의숲 해링턴 플레이스
	디에이치포레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42 디에이치 포레센트
	래미안 로이파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159 래미안 로이파크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59 래미안 솔베뉴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61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41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래미안라클래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89 래미안 라클래시
	래미안블레스티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80 래미안블레스티지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41 반포 래미안아이파크
	반포센트럴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62 반포센트럴자이
	반포써밋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42 반포써밋

공급구분	단지명	주소(지번)
재공급	방배그랑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8-1 방배그랑자이
	보라매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24 보라매자이 더 포레스트
	송파파크데일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605 송파파크데일3단지
	수락리버타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16 수락리버타운
	숲에리움(오류1동 청신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9 숲에리움
	신내 글로리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0 신내글로리움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26 우디안3단지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31 우디안4단지
	신정 파크샤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63-36 파크샤인
	정릉 하늘마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54 정릉하늘마루
	천왕연지마을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3 천왕연지마을2단지
	천왕이편하우스8단지(천왕지구 8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19-1 천왕이편하우스8단지
	초행지붕-동소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7가 2-26
	초행지붕-미아-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960
	초행지붕-신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00-60
	항동 하버라인 지구(9·10·11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36-5
	힐스테이트 청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9 힐스테이트 청계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_재건축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34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2023. 6. 28.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별표1 임대금액 상세 안내

아래 최대 상호전환시 임대조건은 예시금액이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기준 임대조건				상호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계	계약금 (20%)	잔금 (80%)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수색13)	39	신혼부부	89,600	17,920	71,680	373,000	126,900	186,500	44,800	466,300	
		고령자	85,120	17,024	68,096	354,000	120,520	177,000	42,560	442,600	
	49	신혼부부	112,000	22,400	89,600	466,000	158,600	233,000	56,000	582,600	
		고령자	106,400	21,280	85,120	442,000	150,600	221,000	53,200	552,800	
	53	신혼부부	119,200	23,840	95,360	498,000	169,000	249,000	59,600	622,100	
		고령자	113,240	22,648	90,592	473,000	160,540	236,500	56,620	590,900	
더 더블유 서울 (가산동 143-7)	20	청년	소득있는	43,200	8,640	34,560	186,000	61,800	93,000	21,600	231,000
			소득없는	40,800	8,160	32,640	176,000	58,400	88,000	20,400	218,500
		주거급여수급자	36,000	7,200	28,800	155,000	51,500	77,500	18,000	192,500	
	22	청년	소득있는	47,520	9,504	38,016	207,000	68,220	103,500	23,760	256,500
			소득없는	44,880	8,976	35,904	196,000	64,480	98,000	22,440	242,700
	더푸름 (석관동 178-11, 179-20외1)	28	청년	소득있는	57,600	11,520	46,080	231,000	80,700	115,500	28,800
소득없는				54,400	10,880	43,520	218,000	76,200	109,000	27,200	274,600
주거급여수급자			48,000	9,600	38,400	193,000	67,300	96,500	24,000	243,000	
49		신혼부부	109,600	21,920	87,680	438,000	153,400	219,000	54,800	552,100	
대치푸르지오써밋 (대치동제1지구)	51	신혼부부	196,800	39,360	157,440	771,000	273,900	385,500	98,400	976,000	
		고령자	186,960	37,392	149,568	733,000	260,260	366,500	93,480	927,700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주공1)	49	신혼부부	187,200	37,440	149,760	732,000	260,400	366,000	93,600	927,000	
		고령자	177,840	35,568	142,272	695,000	247,340	347,500	88,920	880,200	
	59	신혼부부	225,600	45,120	180,480	883,000	313,900	441,500	112,800	1,118,000	
		고령자	214,320	42,864	171,456	839,000	298,220	419,500	107,160	1,062,200	
반포르엘2차 (신반포14차)	54	신혼부부	224,800	44,960	179,840	805,000	305,300	402,500	112,400	1,039,100	
		고령자	213,560	42,712	170,848	765,000	290,060	382,500	106,780	987,400	
	59	신혼부부	244,800	48,960	195,840	876,000	332,400	438,000	122,400	1,131,000	
		고령자	232,560	46,512	186,048	832,000	315,760	416,000	116,280	1,074,200	
신목동비바힐스 (신월동981-2)	58	신혼부부	147,200	29,440	117,760	566,000	203,800	283,000	73,600	719,300	
		고령자	139,840	27,968	111,872	537,000	193,540	268,500	69,920	682,6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기준 임대조건				상호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계	계약금 (20%)	잔금 (80%)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아현푸르지오클라시티 (아현동275-2)	31	청년	소득있는	84,240	16,848	67,392	336,000	117,840	168,000	42,120	423,700
			소득없는	79,560	15,912	63,648	318,000	111,360	159,000	39,780	400,800
	33	청년	소득있는	89,280	17,856	71,424	358,000	125,080	179,000	44,640	451,000
			소득없는	84,320	16,864	67,456	338,000	118,120	169,000	42,160	425,800
	38	청년	소득있는	102,240	20,448	81,792	410,000	143,240	205,000	51,120	516,500
			소득없는	96,560	19,312	77,248	387,000	135,260	193,500	48,280	487,500
		신혼부부	113,600	22,720	90,880	455,000	159,100	227,500	56,800	573,300	
초행지붕-정릉	20	대학생	41,480	8,296	33,184	166,000	58,080	83,000	20,740	209,2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기준 임대조건				상호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계	계약금 (20%)	잔금 (80%)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강동 리엔파크 11단지	17	대학생	58,480	11,696	46,784	205,000	78,980	102,500	29,240	265,900	
	29S	고령자	109,440	21,888	87,552	383,000	147,740	191,500	54,720	497,000	
강동 리엔파크 14단지	17	청년	소득있는	61,200	12,240	48,960	215,000	82,700	107,500	30,600	278,700
			소득없는	57,800	11,560	46,240	203,000	78,100	101,500	28,900	263,200
개포래미안포레스트	49	신혼부부	187,200	37,440	149,760	656,000	252,800	328,000	93,600	851,000	
고덕자이	59	신혼부부	173,600	34,720	138,880	606,000	234,200	303,000	86,800	786,800	
꿈의숲 효성해링턴플레이스	49	신혼부부	96,800	19,360	77,440	405,000	137,300	202,500	48,400	505,800	
디에이치포레센트	59	고령자	218,880	43,776	175,104	766,000	295,480	383,000	109,440	994,000	
래미안 로이파크	59	신혼부부	192,000	38,400	153,600	641,000	256,100	320,500	96,000	841,000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59	신혼부부	171,200	34,240	136,960	599,000	231,100	299,500	85,600	777,300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48	신혼부부	194,400	38,880	155,520	648,000	259,200	324,000	97,200	850,500	
래미안개포루체하임	49	신혼부부	196,800	39,360	157,440	689,000	265,700	344,500	98,400	894,000	
래미안라클래시	59	신혼부부	244,800	48,960	195,840	858,000	330,600	429,000	122,400	1,113,000	
래미안블레스티지	49	신혼부부	195,200	39,040	156,160	683,000	263,500	341,500	97,600	886,300	
반포래미안아이파크	59	신혼부부	238,400	47,680	190,720	794,000	317,800	397,000	119,200	1,042,300	
반포센트럴자이	59	신혼부부	237,600	47,520	190,080	792,000	316,800	396,000	118,800	1,039,500	
반포써밋	49	신혼부부	203,200	40,640	162,560	678,000	271,000	339,000	101,600	889,6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기준 임대조건				상호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계	계약금 (20%)	잔금 (80%)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방배그랑자이	54	신혼부부		222,400	44,480	177,920	742,000	296,600	371,000	111,200	973,600
보라매자이	36	신혼부부		112,000	22,400	89,600	372,000	149,200	186,000	56,000	488,600
송파파크데일 3	21	청년	소득있는	56,880	11,376	45,504	180,000	74,880	90,000	28,440	239,200
			소득없는	53,720	10,744	42,976	170,000	70,720	85,000	26,860	225,900
수락리버타운	21S	고령자		39,520	7,904	31,616	148,000	54,320	74,000	19,760	189,100
숲에리움(오류1동 청신호)	21	청년	소득있는	69,840	13,968	55,872	251,000	94,940	125,500	34,920	323,700
			소득없는	65,960	13,192	52,768	237,000	89,660	118,500	32,980	305,700
신내 글로리움	44	신혼부부		94,400	18,880	75,520	354,000	129,800	177,000	47,200	452,300
신내3-3 도시형생활주택	29	청년	소득있는	58,320	11,664	46,656	219,000	80,220	109,500	29,160	279,700
			소득없는	55,080	11,016	44,064	207,000	75,780	103,500	27,540	264,300
신내3-4 도시형생활주택	21	청년	소득있는	38,880	7,776	31,104	146,000	53,480	73,000	19,440	186,500
			소득없는	36,720	7,344	29,376	138,000	50,520	69,000	18,360	176,200
신정 파크샤인	36	청년	소득있는	111,600	22,320	89,280	400,000	151,600	200,000	55,800	516,200
			소득없는	105,400	21,080	84,320	377,000	143,100	188,500	52,700	486,700
	41	신혼부부		143,200	28,640	114,560	513,000	194,500	256,500	71,600	662,100
정릉 하늘마루	26S	고령자		86,640	17,328	69,312	303,000	116,940	151,500	43,320	393,200
	26	청년	소득있는	82,080	16,416	65,664	287,000	110,780	143,500	41,040	372,500
			소득없는	77,520	15,504	62,016	271,000	104,620	135,500	38,760	351,700
36	신혼부부		125,600	25,120	100,480	440,000	169,600	220,000	62,800	570,800	
천왕연지마을 2	31	청년	소득있는	54,000	10,800	43,200	194,000	73,400	97,000	27,000	250,200
			소득없는	51,000	10,200	40,800	183,000	69,300	91,500	25,500	236,100
21	고령자		41,040	8,208	32,832	147,000	55,740	73,500	20,520	189,700	
천왕이펜하우스8단지 (천왕지구 8단지)	29S	주거급여수급자		43,800	8,760	35,040	157,000	59,500	78,500	21,900	202,600
	36S	고령자		69,920	13,984	55,936	251,000	95,020	125,500	34,960	323,800
	45	신혼부부		91,200	18,240	72,960	327,000	123,900	163,500	45,600	422,000
초행지붕-동소문	15	대학생		29,240	5,848	23,392	103,000	39,540	51,500	14,620	133,400
초행지붕-미아-3	53	신혼부부		123,200	24,640	98,560	514,000	174,600	257,000	61,600	642,300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구분		기준 임대조건				상호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계	계약금 (20%)	잔금 (80%)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초행지봉-신사	26	청년	소득있는	74,160	14,832	59,328	290,000	103,160	145,000	37,080	367,200
			소득없는	70,040	14,008	56,032	274,000	97,440	137,000	35,020	346,900
	29 (복층)	청년	소득있는	81,360	16,272	65,088	319,000	113,260	159,500	40,680	403,700
			소득없는	76,840	15,368	61,472	301,000	106,940	150,500	38,420	381,000
	23		대학생	63,920	12,784	51,136	250,000	88,920	125,000	31,960	316,500
항동 하버라인 지구 (9·10·11단지)	29S		주거급여수급자	42,600	8,520	34,080	152,000	57,800	76,000	21,300	196,300
	39S		고령자	72,200	14,440	57,760	258,000	98,000	129,000	36,100	333,200
	29	청년	소득있는	51,120	10,224	40,896	183,000	69,420	91,500	25,560	236,200
			소득없는	48,280	9,656	38,624	173,000	65,580	86,500	24,140	223,200
	39	청년	소득있는	68,400	13,680	54,720	245,000	92,900	122,500	34,200	316,200
			소득없는	64,600	12,920	51,680	231,000	87,700	115,500	32,300	298,200
				고령자	72,200	14,440	57,760	258,000	98,000	129,000	36,100
힐스테이트 청계	48		신혼부부	121,600	24,320	97,280	456,000	167,200	228,000	60,800	582,600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_재건축	59		신혼부부	192,000	38,400	153,600	607,000	252,700	303,500	96,000	807,000

별표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
 - 주택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소명방법: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민원회신문(공문)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

별표3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

●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구분	산정방법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p>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마이니스트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 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1개 사업장으로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S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